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7. . . (제 359 회)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연월일	2017. . .

1. 의안명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의 사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입법의 흠결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의 사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과 교체선임)”을“(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과 교체선임)① ~ ④ (생략) <u><신설></u></p>	<p>제10조(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 등)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u></p>